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장경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654 발의연월일: 2020. 12. 17.

발 의 자: 장경태・임호선・홍성국

정청래 • 한준호 • 김남국

이원택 • 이수진 • 임오경

김병주 • 이용우 • 최혜영

장철민 · 김민철 · 오영환

주철현 · 신현영 의원

(17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. 그러나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.

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 력할 필요가 있음.

이를 위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 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 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68조의3제2항).

법률 제 호
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8조의3제2항 중 "지불"을 "지급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8조의3(건설기계 대여대금 지	제68조의3(건설기계 대여대금 지
급보증) ① (생 략)	급보증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	②
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	
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<u>지불</u> 하	<u>지급</u>
기로 발주자, 건설사업자, 건설	
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	
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	
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	
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	
수 있다.	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